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8년 10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동향 및 향후계획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 요약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2018하반기 회계법인 품관실장 확대회의)

[출처: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2018.10.16]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
되는 금융상품의
비지배지분 변동
회계처리

1.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비지배지분 변동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현황]

- A 사(지배기업)는 B 투자조합(종속기업)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음.
- B 투자조합은 한 종류의 출자증권을 주주에게 발행하였고 주주에게 청산시점에 지분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B 투자조합은 만기가 정해져 있음
- A 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KIFRS 1032 AG29A*에 따라 B 투자조합의 비지배지분을 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음.

* (AG29A) 발행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일부 유형의 금융상품은 문단 16A 16B 나 문단 16C 16D 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문단에 따른 분류는 그러한 문단이 없다면 이 기준서에서 금융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이러한 예외를 연결재무제표의 비지배지분의 분류에까지 확장되어 적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단 16A 16B 나 문단 16C 16D 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나 개별 재무제표에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금융상품이 비지배지분인 경우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부채로 분류한다.

[질의 요약]

A 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지분(금융부채)의 변동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 연결재무제표에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 금융부채의 후속측정방법을 상각후원가로 결정하였다면 KIFRS 1039.9 & 47 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배분된 금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금융부채의 추정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경우 KIFRS 1039.AG8 에 따라 실제 현금흐름과 변경된 추정현금흐름을 반영하여 해당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조정금액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판단 근거]

- KIFRS 1032.AG29A 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비지배지분은 KIFRS 1039.10~13 을 적용하여 분리할 필요가 있는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 판단
- KIFRS 1039.AG33(7)에서 규정하는 단위연계특성(단위당 지급금액을 펀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현재의 단위당 가치로 측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음. 다만, 단위연계특성 해당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 필요
- KIFRS 1039.AG8 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장부금액 변동의 계정과목을 정할 수 있음

**피투자회사의
분할합병시
투자자입장
회계처리**

2. 피투자회사의 분할합병시 투자자입장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A(3.21%), B(8.83%), C(5.92%), D(8.91%)사의 지분상품을 매도가능금융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A~D 회사가 동 일자에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함과 동시에 A 사 투자부문이 B~D 사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A 사 투자부문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B~D 투자부문의 주주에게 A 사 투자부문 주식을 교부하였음.
- 따라서 A~D 사의 분할합병 후에 회사는 지주회사(6.5%), A 사업부문(3.21%) B 사업부문(8.83%) C 사업부문(5.92%) D 사업부문(8.91%)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

[질의 요약]

분할합병으로 A~D 사 투자부문의 주주인 회사가 교부받은 지주회사의 주식 및 기존 A~D 사의 투자부문 주식과 관련된 적절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회신 요약]

-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B~D 사 투자부문 주식의 경우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동 주식과 교환하여 수취한 합병 후의 A 사 투자부문(지주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그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인식함. 반면 금융
- 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A 사 투자부문 주식의 장부금액을 제거하지 않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판단 근거]

- B~D 사 투자부문 주식은 A 사 주식과 교환되어 B~D 사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제거요건 충족하나 A 사 투자부문 주식은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고 양도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거조건을 미충족함.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 호 문단 17,18,20,21,40,AG62

**상품권 낙전수입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3. 상품권 낙전수입에 대한 수익인식 시기

[현황]

- 회사는 고객이 브랜드사에서 일정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하며 이를 채널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환불요청 가능, 유효기간 경과 후 상법상 소멸시효 전에는 판매금액의 90% 환불 가능, 소멸시효 만료 후에는 환불 불가함.
- 회사의 수익은 브랜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고객이 사용할 때 일정비율 수취)와 낙전수입(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 시효가 도래할 때까지 고객이 미사용상품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으로 구성됨.
- 회사의 비용은 채널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상품권 판매시 할인 금액임.

[질의 요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입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요약]

- 상품권 미사용금액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1039 호의 금융부채 제거규정에 따라 금융부채가 소멸할 때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한 부채의 장부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종속기업 매각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표시방법

[판단 근거]

- 회사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고객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이 브랜드사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브랜드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 호 문단 11,19, 제 1039 호 문단 39,AG57

4. 종속기업 매각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표시방법 질의

[현황]

- 에너지의 개발, 생산, 판매 등과 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A 사는 100% 종속기업인 B 사를 보유, B 사는 100% 종속기업 C 사를 보유.
- B 사는 SPC 형태의 종속기업(C 사)을 설립하여 사업(태양광발전소)의 개발 및 건설을 진행함.
- C 사는 건설중인 자산(태양광발전소)이 대부분 B 사는 건설 중인 C 사의 지분 100%를 시장에 매각하고자 함.

[질의 요약]

A 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또는 영업외손익, 중단영업손익)인가?

[회신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5 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1~32 에 따라 종속기업 매각이 중단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영업수익으로 분류함..

[판단 근거]

- 중단영업에 해당한다면 영업수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
- 주된 영업활동에 관한 판단은 정관 상 사업목적,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매각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 및 재무적 유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관련규정: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 KIFRS 제 1001 호 문단 한 138.2, KIFRS 제 1105 호 문단 31~32

특수관계자 범위

5.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검토

[현황]

- 개인주주 갑은 A 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B 사를 지배함. 한편 갑과 B 사는 C 사에 대한 지분을 각각 15%와 40%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 요약]

이 경우 A 사와 C 사는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요약]

- 갑이 B 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B 사가 보유한 C 사에 대한 의결권 전부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면 갑은 직접 보유한 지분 15%와 종속기업 B 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 40%를 통해 C 사에 대한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므로 갑은 C 사에 대한 힘을 보유함.
- 이에 기초하여 갑이 C 사에 대해 KIFR 제 1110 호 문단 7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갑은 C 사를 지배하고 wp1024 호 문단 9 에 따라 갑이 A 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고 C 사를 지배하는 경우 A 사와 C 사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그룹 CI 개발비용 회계처리

[판단 근거]

- 제 1110 호에서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또는 기업인지와 관계없이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기업인 경우와 동일하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여야 함.
- 제 1110 호 문단 B73~B75 에 따르면 종속기업은 투자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C 사(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이 종속기업 B 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관련규정: KIFRS 1103.B1~B3, KIFRS 1110.6~7, B35, B73~75, KIFRS 1024.9, 사례 4, IE16~IE18

6. 그룹 CI 개발비용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새로운 그룹 CI 개발을 진행하여 해당 CI 의 상표권을 등록하였고 Build-up(브랜드 이미지 제고 광고) 과정을 통해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인 후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임.

[질의 요약]

그룹 CI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그룹 CI 개발비용(CI 광고비 포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 호 문단 63 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상표 출원 및 등록원가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판단 근거]

- 그룹 CI 가 나타내는 브랜드의 개발원가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발생한 원가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다만, 상표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상표권은 제 1038 호 무형자산 문단 12 의 식별 가능성과 문단 13 의 통제 여부를 충족하므로 상표권이 그 밖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원가(상표 출원 및 등록 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8 호 무형자산 문단 12, 13, 63, 64

건축물의 사용수익기부에 관한 회계처리

7. 건축물의 사용수익기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

[현황]

- A 사는 B 사와 건축물의 사용수익기부에 관한 약정서와 건축물 무상사용기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A 사 소유 토지에 B 사의 계산과 비용으로 건축물을 약 5 개월간 신축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은 A 사에 귀속하고 A 사는 B 사에 15 년 11 개월간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함

[질의 요약]

A 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요약]

- A 사가 건축물 신축시점부터 해당 건축물을 통제한다면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고 리스개시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 호 리스를 적용함. 토지 리스에 대해서는 운용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함. 반면, 건축물 리스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연장 선택권의 행사 또는 리스 조건 변경에 합의인지 판단하여 리스기간을 선정하고 리스 분류를 판단하여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를 결정함.

**현물출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판단 근거]

- 토지와 건축물 모두 운용리스라면 A 사는 건설기간 동안 투자부동산과 선수리스료를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운용리스자산은 감가상각하고 리스료 수익은 수익으로 인식함. 토지는 운용리스이고 건축물은 금융리스라면 A 사는 건축물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을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으로 인식하되 해지불능기간 건축물의 리스료는 금융리스채권과 상계함. 또한, 해지불능기간 토지 리스료를 선수리스료로 인식함.
- 관련규정: KIFRS 1017 호 문단 4, 7~17, 36~39, 49~54, KIFS 1040 호 문단 5, 16

8. 현물출자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현황]

- 동일지배하의 현물출자로 승계받은 건물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세무기준액(공정가치)과의 차이 발생

[질의 요약]

이 차이를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KIFS 제 1012 호 법인세 문단 24 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 건물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1024.61A 와 에 따라 자본에 직접 인식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 이후 건물 처분시 동 건물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당기손익으로 반영.

[판단 근거]

- 현물출자가 사업에 해당할 경우 B 사는 동 기준서 문단 15 와 문단 24 에 따른 면제규정 적용 불가
* 현물출자가 개별자산의 이전이었다면 1016.6 에 따라 취득원가를 최초인식 하였을 것이므로 세무기준액과 회계상 장부금액이 동일하여 일시적 차이 발생하지 않음
- 향후 건물의 상각, 손상, 처분 등으로 변동되는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련규정: KIFRS 1012 호 문단 15, 24, 61A, 62A

**지배력 상실과
동시에
내부거래채권
매각시 회계처리**

9. 지배력 상실과 동시에 내부거래채권 매각시 회계처리

[현황]

- 지배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채권 9,000 억원을 회수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건(채권매각약정*)으로 지배지분 51% 전부를 제삼자에게 매각(지분매각약정)
*세무적 제약에 따라 채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한 후 매수자가 출자전환하여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진행

[질의 요약]

지배기업은 상기 채권매각 약정과 지분매각 약정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갑설: 지배력 상실을 위한 단일 거래로 회계처리

을설: 별개의 거래로서 순차적으로 회계처리

[회신 요약]

- 질의의 두 약정이 제 1110 호 문단 B97 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제시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질의의 두 약정은 문단 B97 의 단일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설에 따라 회계처리함.

[판단 근거]

- 제시된 사실 관계에 따르면 질의의 두 약정은 적어도 서로를 고려하여 체결되었으며 그 결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제 1110 호 문단 B97 에서 제시하는 지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을 나타내며 따라서 질의의 두 약정을 동 문단의 단일 거래로 보고 동 기준서 문단 B98 에 따라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수행함
- 관련규정: KIFRS 1110 호 문단 문단 B97, B98

**분할합병
신설법인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10. 분할합병 신설법인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관련 질의

[현황]

- A 사, B 사, C 사, D 사는 동 일자에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을 함과 동시에 B 사의 투자부문(인적분할 신설회사)이 A 사, C 사 및 D 사의 투자부문(각 사의 인적분할 신설회사)을 흡수합병함.
- * 상기 분할합병은 동일 지배하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요약]

B 사의 설립시점 재무제표 표시방법은?

[회신 요약]

- 분할과 합병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합병거래는 설립 직후의 거래로 구분하여 표시

[판단 근거]

- 분할합병이 동 일자에 인적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발생한 거래이긴 하지만 인적분할을 통하여 회사의 설립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합병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인적분할 거래와 합병거래의 순서가 존재함.

**수익증권 환매시
제거시점 판단**

11. 수익증권 환매시 제거시점 판단에 관한 질의

[현황]

- A 사(비영리법인)는 '09 년에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펀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을 환매하였으며 당시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 8 호 유가증권을 적용하였음
'09.12.22 환매청구
'09.12.29 기준가격 결정
'09.12.31 결산일
'10.1.5 자금결재

[질의 요약]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시점으로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전부 소멸되었다면 수익증권을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기준가격 결정일에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확정된 수익증권 환매대금 수취권리를 매수채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인식

[판단 근거]

- 환매 청구 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 결정일에 환매청구인의 수익증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확정된 환매대금을 수취할 권리인 금융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 8 호 문단 48 에 따라 기준 가격 결정일에 수익증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미수채권 등을 인식함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권 채무
조정 시점

-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는 거래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 의무의 소멸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 필요

12.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채권 채무 조정 시점 판단에 관한 질의

[현황]

- A 사는 '13 년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14 년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A 사는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시점에 B 사에 대한 채권 C 와 채무 D 가 있었으며 당시 법원의 회생계획안은 B 사에 대한 채무 D 100%를 출자전환 하도록 하였음.
- A 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B 사에 대한 채무 D 전액을 '14 년도에 출자전환함.
- 한편 B 사는 '14 년에 채권 C 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 심은 B 사 승소, 2 심은 A 사가 승소하였으나 '17 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이 결정됨.

[질의 요약]

상기의 거래에서 채권 채무조정 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요약]

- 법원의 인가에 의한 채권 채무조정으로서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약정한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이 없다면, 채권채무 조정시점은 법원의 인가일임.

[판단 근거]

- 채권자 채무자간 약정 사항 중 미충족된 조건 없이 법원의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6 장 문단 6.85 에 따라 채권 채무조정 실질적인 완성시점은 법원의 인가일임. 따라서 '14 년에 결정된 법원의 회생계획안을 반영 하여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 채무조정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과는 별개의 계류중인 소송 사건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4 장 문단, 14.4, 14.21 에 따라 회계처리함.

홍쇼핑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13. 홍쇼핑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현황]

- 회사는 정수기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대여(렌탈)하는 회사이고 정수기 매출 대부분이 홍쇼핑 방송을 통한 렌탈계약으로 발생하는 데 이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 회사가 홍쇼핑사에 지급하는 방송수수료는 대부분 정액 계약이며 일부는 방송노출 가중분 및 설치고객수에 따라 정률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 요약]

이 경우 지급된 홍쇼핑 방송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요약]

- 해당 렌탈계약을 문단 13.5~13.7 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홍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중 운용리스의 협상과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발생시점에 광고비 등의 비용으로 인식하며 설치고객 수수료는 자산으로 식별함.

[판단 근거]

- 제 13 장 용어의 정의에서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증분원가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으로 해석됨.

- 문단 13.31 에 따라 흥쇼핑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리스의 협상과 계약 체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증분원가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크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45~146, 11.23, 실 11.17, 13.5~7, 13.24, 13.28, 13.31, 용어의 정의, 실 13.17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14.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회계처리

[현황]

-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고 있음 .

[질의 요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인식 및 측정 방식은?

[회신 요약]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최초 인식, 후속 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5 장 문단 5.4~5.6 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

[판단 근거]

- 현행 정부보조금, 재고자산, 금융상품 기준서로는 제도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야 함..
- REC 최초 인식에는 재고자산이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기준을 참조하여 REC 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부하거나 정부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 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REC 를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면 재고자산 후속측정방법을 참조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문단 5.4~5.6, 제7장 문단 7.3~7.5, 7.20 제17장 문단 17.2~17.7, 제33장 문단 33.2~33.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9.10]

개요

1. 개요

- ◆(배경)외감법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 ◆(주요내용)총 22 개 서식 신설(16 개)·개정(6 개) 등

① 피조사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화하기 위해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여 해당 서식을 신설·개정
*조치결정前 대상자에 위반·조치내용 등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②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목적으로 지배구조 등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개정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 추가사항(회계담당자 경력, 감사 중 전문가 활용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

④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을 신설

⑤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등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일정)사전예고 및 규제위 심사(~'18.10.17.)→시행('18.11.1.)

배경

2. 배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감법’) 전면개정('18.11.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진행중*으로,

*新외감법 시행령 : '18.4~5 월 및 '18.8 월(再) 입법예고 완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 '18.8~9 월 변경예고 중

◦주요 개정사항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포함

□이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서식을 마련하여 외감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하고자 전면개정 추진

※심사·감리 관련 시행세칙*은 해당 외감규정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19.4.1.인바, 감리선진화 TF 논의 및 외감규정 최종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 예정

*심사 및 감리 업무의 실시·방법·절차, 심사 및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

주요내용

3. 주요내용

□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총 22개 서식을 신설(16개) 또는 개정(6개)하였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

<주요 신설·개정서식>

별지번호	서식	구분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개정
4	□외부감사 실시내용(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개정
5~7	□회계법인 사업보고서·투명성보고서·수시보고서	신설·개정
8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신설
14	□감사인 선임보고서	신설
15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정
32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신설
34	□감리결과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가.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별지 제32호, 제34호)

-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조치사전통지서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는바,
 - *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사전통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

나.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별지 제5~7호)

- (사업보고서 개정)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방안으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 신규 공시사항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하고,
 - *지배구조, 품질관리 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 심리현황 등
 -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투명성보고서) 마련
 -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 (수시보고서 신설)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증선위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한바,
 - *감사보고서 재발행, 독립성 위반,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합병, 행정조치 등
 - 각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보고 내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을 제시한 서식 신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3호 및 제4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외감규정 개정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첨부 등 요구사항을 공시서식에 반영
 - 아울러, 회계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
-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 실시내용의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외부감사 실시내용' 서식을 개정

라.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14~21호)

- (감사계약체결보고)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사원 수·감사인지정 여부 등을 기재토록 정비

- (감사인 선임 및 변경보고)신고 편의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시 사유보고 등 서식 규정화
-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외감법규 개정안*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 및 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회사 및 감사인의 신고서식 마련

* 주기적 지정제 도입 및 직권지정 사유의 확대로 지정대상회사수 대폭 증가

마.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서식 등 신설 (별지 제8~13호)

- (제도개요)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19.11.1. 이후 시행*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와 신청서식 마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은 시행 6개월 전인 '19.5월부터 가능

- (신청서식)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물적설비 요건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법인, 독립성·업무시간관리시스템, 감사배정·조서관리체계 등의 구축현황과 운영실적을 기재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분집중 방지 견제장치, 이사회 운영현황, 외국법인 제휴현황 등을 기재

◦인력 요건은 등록공인회계사수 및 품질관리업무 인력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기재

◦심리체계 요건은 감사보고서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사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기타서식)등록심사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자료요구·조사, 결과보고 등의 문서내용을 규정화하여,

◦등록심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실지조사통보서, 등록신청 보완요구서,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 신설

바.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 마련

- (제도개요)주기적 지정대상*1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2

*1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2주기적 지정대상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지정

- (지정기준)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일정 재무기준 해당 등의 사유 발생시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를 추가하여 2개 사업연도를 지정*

*예) '17사업연도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가 '18사업연도에도 감사인을 미선임한 경우 2개 사업연도('18~'19) 감사인 지정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증선위 조치내용에 따라 감사인 지정

향후일정

4. 향후일정

-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18.9.7.~'18.10.17.)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8.11.1. 시행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 및 향후 계획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구글세) 동향 및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 10. 19 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자료를 통하여 과세 현황 및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1. 구글세 개요

- 구글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법인세 등 세금을 의미

2. 구글세 관련 주요 쟁점 및 국제 논의 동향

-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IT서비스의 경우 서버*)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IT 서비스의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 합의(OECD모델 조세조약 개정, '03년)

- 현재 OECD·EU에서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잠정 보고서 발표(도입 합의사안 아님)

<OECD·EU 과세안 주요 내용>

	OECD Interim Report (3.16)	EU 집행위 과세안 (3.21)
단기 대책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세율 (EU안 : 3%)로 과세	
도입여부	미합의사항→도입 미관고	회원국 전원합의시 도입의무 발생
장기 대책	‘중요한 디지털 실재’ 등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향후 계획	~’20년까지 최종보고서 완성	지속 논의

3.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현황

-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버가 국외에 위치)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상황

*앱 마켓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현재도 과세중('14년 세법개정)

-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 및 애플코리아의 상품 판매 등은 국내 자회사가 직접 계약체결·영업하므로 법인세 과세·납부 중

-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세금 추정실적은 일종의 협의 과세로 추정되며 명확한 과세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 *영국 과세관청(HMRC)은 구글영국으로부터 세금 2,200억원을 납부받기로 합의('16년2월 BBC News)
 -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영국내 온라인 광고 매출 및 판매지원 서비스 수수료 관련 납세로 추정됨
- 프랑스의 경우 구글에 대한 고정사업장 과세(13억불)가 법원에서 취소됨('17년7월)

② EU의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 관련

- 단기대책의 국내 도입여부는 다음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에 모두 적용 →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
 - 간접세적 성격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도 세 부담 발생, 소비자전가 및 부가세와 중복과세 우려
 - 우리나라의 매출세 도입에 따라 타국가에서도 매출세 도입으로 대응하는 경우 외국진출 우리기업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효과 우려
-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OECD, EU 내에서도 이견 상존

③ 영국 등의 우회수익세* 도입 필요성 관련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 영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조치와는 구별됨
 - ※ 영국도 우회수익세와 별도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추진 중
-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조약과도 상충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영국 등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 조세법 체계·개념 및 환경에 차이가 있음

*프랑스(대륙법계)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16.12월)

3. 향후 계획

-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BEPS* 이행체 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세원잠식 및 이전소득(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18. 10. 16 (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임

주요 개정 내용	관련 법령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시행령§155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종과 및 종부세 과세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종합부동산세시행령§3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1.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시행령§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 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 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 설정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축소 (소득세법시행령§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시행령§167의3 등)

-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 + 10%p (3주택이상)일반세율 + 20%p

- (적용시기) '19.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4.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3)

-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 (적용시기)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5.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97의3·5)

-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9.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9.9.13.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덴마크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계약금 외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후에 추가로 해당 주식의 양도인에게 조건부 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조건부 지급금은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3조 양도소득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